

부속서 3-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

두주

1.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.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,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
2.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일반해석규칙, 부의 주 및 류의 주를 포함하여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에 근거하여 구성된다.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주기적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환은 제4.14 조제3항나호에 따라 수행된다.
3. 세번 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.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 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,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,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,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.
4. 이 부속서 내의 류 주해는, 특정한 제외가 있지 아니하는 한, 해당 류 내의 모든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된다.
5. 다음의 정의는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.
 - 가. **부란**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.
 - 나. **류란**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.
 - 다. **호란**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.
 - 라. **소호란**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.
6. 이 부속서 제3열의 목적상,
 - 가. **완전생산기준(WO)**이란 제3.3조에 따라 해당 상품이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될 것을 말한다.
 - 나. **2단위 세번 변경기준(CC)**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류 수준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.

- 다. 4단위 세번 변경기준(CTH)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호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.
- 라. 6단위 세번 변경기준(CTSH)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소호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.
- 마.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35퍼센트 이상 [RVC(35)]일 것이란 제3.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.
- 바.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[RVC(40)]일 것이란 제3.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.
- 사.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[RVC(30/40)]일 것이란 제3.4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.